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나95785(본소) 손해배상(기) 2012나9579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C
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1가합14556(본소), 2011가합14563(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8.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각자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이하, ㈜는 생략한다}에게 1억 5,0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배포, 발행, 전송,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프로그램을 제3자에게 구축하게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계약체결의 권유, 광고, 홍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프로그램의 유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시스템 유지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계약체결, 그 계약체결의 권유, 광고, 홍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반소에 관한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본소는 공공도서관에 사서(司書)용 데스크탑 RFID 단말기를 공급한 원고 A과 그 대표이사인 원고 B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개발한 RFID 단말기와 도서관의 자료관리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프로그램 중 일부 파일(ECO_RFID.INI)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A이 RFID 리더기를 공급하면서 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ECO_RFID.INI 파일의 환경설경을 변경한 행위는 피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공공도서관에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등 원고들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유포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이 1억 5,000만 원(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중 일부청구), 원고 B이 1,000만 원(위자료)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이 사건 반소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인 ECO_RFID.INI 파일의 환경설정을 피고의 승낙 없이 변경하였으며 피고의 RFID 단말기 외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면서 원고 A의 RFID 단말기 구동을 위하여 피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지청구권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의 복제, 개작 등의 금지청구와 아울러 불법행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에 기초한 손해배상 1억 원(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중 일부청구)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프로그램의 복제, 개작 등 금지청구 및 일부 손해배상청구(재산적 손해 2,400만 원과 지연손해금)}를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가 그 패소 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 2, 3, 4, 5, 갑18의 1에서 10, 갑26, 27, 을1, 3, 4, 을5의 1에서 12, 을6, 을7의 1, 2, 3, 을9의 1, 2, 을10의 1, 2, 을11의 1, 2, 을13의 1, 2, 3, 4, 을15의 1에서 11, 을21의 1, 2, 을22, 24, 33, 34, 을35의 1, 2, 제1심법원의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2011. 6. 17.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

㈎ 원고 A은 자동제어장치제조, 컴퓨터관련기기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와 국립중앙도서관 사이의 시스템개발계약**

㈎ 피고는 2002년 무렵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보시스템을 확장하고 개선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종래의 도서관 정보시스템인 KOLIS, KOLIS-NET, KOLAS Ⅱ의 성능과 기능을 개선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한 다음, 2002. 12. 무렵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공급하였다.

㈏ 피고는 다시 2007년 무렵 시작된 국립중앙도서관의 KOLAS Ⅲ 개발 사업에 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여하여, 2007. 7. 8.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이하, 'KOLAS Ⅲ 시스템'이라 한다)' 및 '작은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KOLASYS)'의 보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정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KOLASⅢ 시스템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며 설치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07. 8. 14. 조달청과 국립중앙도서관의 '2007년 KOLASⅢ 시스템 신규개발 및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 확장·개선사업'을 위탁대금 2억 3,850만 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7. 12. 14. 위탁받은 업무를 완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KOLASⅢ 시스템을 공급하였다.

㈑ 그 후 피고는 2010. 8. 무렵까지 전국 680여 개의 공공도서관 중 KOLASⅢ 시스템의 설치를 원하는 430여 개의 공공도서관에 이를 설치하였다.

(3) 별지1 목록 기재 프로그램(이하, '피고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발

㈎ 피고는 KOLASⅢ 시스템 등의 자료관리 시스템과 별도로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IC칩과 무선을 통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식기술)을 이용하여 도서에 부착한 태그(전자칩)의 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함으로써 도서의 대출과 반납 등을 자동화하고 도난방지까지 할 수 있는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기'(제품명 : ER200 리더기, 이하, 'RFID 단말기'라 한다)를 개발하였다.

㈏ RFID 단말기를 KOLASⅢ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RFID 단말기를 통해 입력되는 도서의 대출과 반납 등에 관한 정보를 KOLASⅢ 시스템에 연동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2005. 3. 3.과 2007. 1. 8. RFID 단말기 구동 프로그램인 피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2009. 11. 23.과 2010. 9. 10.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작권등록을 마쳤다.

㈐ 피고 프로그램은 주된 프로그램인 SmartID 프로그램(별지1 목록 1 기재 프로그램으로서, 등록된 파일에는 SmartID.exe이 있다)과 보조 프로그램(별지1 목록 2 기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피고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은 RFID 단말기와 KOLASⅢ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10여 개의 동적 연결프로그램(RFID용 DLL 파일)인 ① RFID_JOB.DLL ② RFID_API.DLL ③ UI_RFID.DLL ④ SIO_API.DLL ⑤ MR100_API.DLL ⑥ MR100_Reader.DLL ⑦ ER100_API.DLL ⑧ ER100_Reader.DLL ⑨ ER200_API.DLL ⑩ ER200_Reader.DLL)과 2개의 RFID 장비구동용 설정파일(ECO_RFID.INI 파일과 RFID_API_S.INI 파일)로 이루어져 있다.

⑷ 원고들의 피고 프로그램 사용

㈎ 원고 A은 도서관에 도서정리용 RFID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고 A은 원고 A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RFID 단말기(제품명 : EZ-RD100 리더기)를 KOLASⅢ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단말기 구동프로그램으로 피고 프로그램과 달리 'EZ-100RD'라는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 원고들은 도서관에 원고 A의 RFID 단말기 제품을 공급하면서 EZ-100RD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사서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KOLASⅢ 시스템의 프로그램과 일체화되지 않고 연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KOLASⅢ 시스템이 설치된 도서관에 피고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들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의 승낙 없이 피고 프로그램의 RFID 장비구동용 설정파일 중 하나인 ECO_RFID.INI 파일을 각 도서관의 컴퓨터에 입력하고, RFI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단말기가 연결될 컴퓨터의 포트를 확인하여 그 연결포트를 'COM0'에서 'COM1' 등으로 변경하고, RFID 리더기의 타입을 피고의 RFID 단말기인 'ER200'으로 설정하는 등 ECO_RFID.INI 파일 중 포트의 명칭과 리더기의 타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 프로그램을 원고 A의 EZ-RD100 RFID 리더기 구동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의 RFID 단말기와 그 구동프로그램인 피고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암호를 해독하는 'SmartID 통신암호 해독기(Converter, 이하 '통신암호 해독기'라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 A의 RFID 단말기에 장착하는 방법으로 원고 A의 RFID 리더기 구동을 위해 피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고소 및 관련 형사사건 경과

㈎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저작물인 피고 프로그램을 안양어린이도서관, 동작도서관 등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함으로써 피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무렵 원고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수사한 결과 검사가 2010. 2. 17. 원고들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0. 5. 11. 그 항고가 기각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0. 5. 24.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10. 7. 23. 재정신청을 취하하였다.

㈏ 피고는 2010. 8. 무렵 다시 원고들이 안양어린이도서관 등을 포함하여 KOLAS Ⅲ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공공도서관에서도 피고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2011. 2. 9. 다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제기하여 2011. 7. 26.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고 그 수사결과 검사는 2013. 2. 27. 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시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 원고 A도 피고 측이 피고 프로그램의 저작자, 창작연월일, 프로그램 명칭을 거짓으로 등록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등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수사한 결과 검사가 2012. 9. 18.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⑹ 피고의 저작권침해정지가처분 사건의 경과

피고가 원고 A을 상대로 피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의 가처분(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합679호)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1. 6. 28.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저작권침해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원고 A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2. 1. 11. 그 결정절차에서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합1256호). 원고 A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2. 9. 20. 항고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라224호), 원고 A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에 계속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반소청구에 관하여

⑴ 피고 프로그램 중 ECO_RFID.INI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⑵ ECO_RFID.INI 파일의 무단 복제 등으로 인한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

⑶ 원고들이 ECO_RFID.INI 파일을 포함하여 피고 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배포하였는지 여부

⑷ 통신암호 해독기를 설치한 것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로써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나. 본소청구에 관하여(피고의 허위비방행위 등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3. 이 법원의 판단

가. 반소청구에 관하여

(1) 피고 프로그램 중 ECO_RFID.INI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ECO_RFID.INI 파일은 지시·명령어인 다른 프로그램 호출명령, 작업구분 명령, 특정변수에 설정한 값을 배정(할당 또는 치환)하는 배정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크립트형 언어 형식으로 표현되어 다른 프로그램(SmartID.exe, RFID_API.DLL, ER200_Reader.DLL)에 의하여 '표현' 문장 단위로 구문 해석되어 간접적으로 실행되며, 그 실행 결과 외부프로그램과 기능의 호출, 통신포트의 변경, 피고 단말기 종류의 지정, 재시도회수의 변경 등의 특정한 결과가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2조 16호에 정해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반론]

원고들은, ECO_RFID.INI 파일은 RFID 단말기를 구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용 환경을 설정하는 환경설정파일에 불과하고,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판단]

㈎ 증거(갑 55, 56, 75, 을7의 1, 2, 3,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프로그램은 피고의 RFID 단말기를 제어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피고의 RFID 단말기 제어프로그램인 RFID_JOB.DLL 등 10개의 동적 연결프로그램(RFID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DLL 파일)과 유기적으로 상호 연동되어 동작되고, RFID 단말기 구동용 설정파일인 ECO_RFID.INI 파일과 RFID_API_S.INI 파일을 통해 구동환경이 설정된다.

② 피고 프로그램의 작동 순서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자료 관리시스템은 피고 전용 SmartID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SmartID 프로그램은 ECO_RFID.INI 파일에 기록된 ER200이라는 마스터키(master key)를 식별한 다음 ER200 단말기에 암호화된 액세스코드(access code)와 명령어를 송신하기 위하여 RFID 단말기 연계 모듈인 RFID_API.DLL 등을 호출한다. RFID 단말기는 암호화된 액세스코드(access code)와 명령어를 해석하여 RFID 태그(Tag)의 인식, 메모리 Read·Write, 보안설정·해제 등의 지시, 명령을 처리한 다음 그 결과를 다시 암호화하여 RFID 단말기 연계 모듈로 전송한다. SmartID 프로그램은 전송된 데이터를 해석하여 등록, 검색, 대출과 반납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로 사용한다.

③ ECO_RFID.INI 파일은 다음과 같이 4종류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ER_READER.INI]('구성1'이라 한다)

- [.Set Values for RFID Reader], [.for SIO], [.FOR API]('구성2'라 한다)

- [SIO_PORT_NAME = COM4], [READER_TYPE = ER200], [SIO_BAUD_RATE =115200], [SIO_TIME_OUT = 100ms], [SIO_RX_RETRY = 20times], [SIO_SLEEP_TIME = 20ms], [FUNC_RETRY_CNT = 5]('구성3'이라 한다)

- [(COMx : Windows/dev/ttySx : Linux)], [(ER100/ER200)], [(38400/115200)], [(> 100 ms for Linux)], [(RX Retry Count)],[(Sleep TIME After Rx)]('구성4'라 한다)

④ ECO_RFID.INI 파일의 구성3은 연결포트를 COM4로 설정하는 정보(SIO_PORT_NAME = COM4), 프로그램에 연결된 RFID 리더기의 종류를 정의하는 정보(READER_TYPE = ER200), 프로그램과 RFID 리더기 사이의 통신 속도를 정의하는 정보(SIO_BAUD_RATE =115200), 통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해지조건이 100ms라는 것을 정의하는 정보(SIO_TIME_OUT = 100ms), 수신반복회수가 20회라는 것을 정의하는 정보(SIO_RX_RETRY = 20times), 프로그램과 RFID 리더기 사이의 통신간격이 20ms라는 것을 정의하는 정보(SIO_SLEEP_TIME = 20ms), 재호출 회수를 5회라고 정의하는 정보(FUNC_RETRY_CNT = 5)를 의미한다. 또 ECO_RFID.INI 파일의 구성4는 설명, 용례, 참고 등을 기술한 부분(주석문)으로서 프로그램에서 실행되지 않는다.

⑤ ECO_RFID.INI 파일은 RFID 리더기를 구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SmartID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파일로서 본 프로그램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⑥ 한편 피고가 개발한 KOLASⅢ 시스템에 포함된 다른 INI파일인 'lprn_api.INI'파일에는 '.'으로 시작되는 부분 다음에 한글로 표현된 부분{시스템 환경변수로(변수이름:ECODEV_INIPATH, 변수값: . .WWcfg) 잡아서 넣을 것}이 포함되어 있다.

㈏ 저작권법 2조 16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고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지시와 명령의 조합으로서 그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를 작동하게 하여 일정한 처리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프로그램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것이 저작권법 2조 16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전자파일로서 기록매체에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정보처리장치가 이를 읽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된 것이라도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되지 아니한다.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프로그램의 처리에 있어 어떤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일정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이외에 그 프로그램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처리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흔히 본체 프로그램과 별개의 파일에 기록하여 두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프로그램이 그 파일을 읽어와 정보처리장치가 그 결과를 처리하지만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지시·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은 아니다. 다만 이용되는 파일이 다르면 정보처리장치의 처리 결과가 다르게 되나, 그것은 파일에 기술된 데이터 내용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처리결과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데이터가 정보처리장치에 지시나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처럼 데이터를 기술함에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에 규정한 일정한 기호나 문자가 기술되어 있다면 프로그램이 이를 읽어와 그 기호나 문자에 의미를 부여하여 처리를 수행하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이 그 기호나 문자를 데이터로 읽어와 정해진 처리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기호나 문자 등을 가지고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지시, 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기호나 문자가 들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표현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현이 엄밀한 의미에서 독창성이 있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작성자의 어떠한 개성이 발현된 것이 필요하고, 이는 프로그램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기술에 작성자의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게 된다. 한편 프로그램은 그 성질상 표현하는 기호가 제약되고 언어체계가 엄격하며 또 정보처리장치를 조금이라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면 지시, 명령의 조합 선택이 한정되므로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인 기술이 상호 유사한 것이 적지 아니하다. 가령 프로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램의 구체적인 기술이 누가 작성하여도 거의 동일하게 되는 것이거나, 간단한 내용과 같이 짧은 표현방법으로 기술한 것 또는 매우 흔한 표현인 경우에도 이를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면 정보처리장치의 폭넓은 이용 등을 방해하고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 또 저작권법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기술이 매우 흔한 것인 경우에 이를 보호대상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능이나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하고 독점하도록 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지시, 명령의 조합인 프로그램의 구체적 표현이 이러한 기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개성이 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확장자가 'INI'인 파일은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필요한 초기화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로서 초기화 파일(initialization file)이란 의미의 약어를 확장자의 명칭으로 정한 것이고,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설정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설명 파일이며, 일반 텍스트 편집기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응용프로그램은 INI파일을 통해 프로그램 동작에 필요한 정보나 설정 정보를 저장하여 두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 정보를 읽어와 계속 사용한다. 응용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해당 응용프로그램과 연결된 INI파일을 열어 초기화된 정보를 읽게 되며, INI파일에 기술된 내용은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이용된다.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CO_RFID.INI 파일에 기록된 정보는 피고의 RFID 리더기를 구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SmartID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술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용이 순차적으로 읽혀져 특정 구문형식에 따라 해석되는 것일 뿐 명령어의 내용에 따라 다른 함수를 호출하거나 다른 구문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에 기록된 정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혀지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과정은 ECO_RFID.INI 파일의 명령에 따르는 것도 아니다. 또 ECO_RFID.INI 파일의 주된 내용인 구성3은 비록 그 형식이 등호(=)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연결포트, 리더기의 종류, 통신 속도, 통신해지조건, 수신반복회수, 통신간격, 재호출 회수를 정의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이 기록된 정보는 명령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으며 응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읽혀져 정보로서의 역할만을 한다. ECO_RFID.INI 파일의 구성1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ER_READER.INI'을 호출하는 지시·명령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대상파일인 'ER_READER.INI' 역시 확장자가 'INI'인 정보파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구성1이 ECO_RFID.INI 파일 내지 응용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또한 ECO_RFID.INI 파일의 구성2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작업 구문 명령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가 개발한 KOLASⅢ 시스템에 포함된 다른 INI파일인 'lprn_api.INI'파일의 경우 '.'으로 시작되는 부분 다음에 한글로 표현된 주석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으로 시작되는 형식의 구성1, 2도 주석문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피고는 제1심에서 주로 구성3이 지시·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이고, 구성1, 2는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같은 지시·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ECO_RFID.INI 파일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정보처리장치 내에서 특정한 결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시키는 지시나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ECO_RFID.INI 파일은 단지 응용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초기 정보를 인식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파일이나 데이터파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ECO_RFID.INI 파일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누가 작성하여도 거의 동일하게 되는 것이거나 간단한 내용에 불과하여 프로그램 작성자의 어떠한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ECO_RFID.INI 파일의 무단 복제 등으로 인한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별지2, 3 목록 기재와 같이 총 32회{중복되는 부분(2009. 9. 28.자 안양어린이도서관 및 2009. 5. 25.자 서울시교육청 동작도서관 부분) 제외}에 걸쳐 원고 A의 RFID 단말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의 RFID 단말기를 KOLAS Ⅲ 시스템과 연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 프로그램의 일부인 ECO_RFID.INI 파일을 복제, 배포하거나 ECO_RFID.INI 파일의 설정 값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그러나 ECO_RFID.INI 파일은 응용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초기 정보를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파일에 불과하고 저작권법 2조 16호에 정해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원고 A이 도서관에 납품한 RFID 단말기를 KOLASⅢ 시스템과 연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허락 없이 ECO_RFID.INI 파일을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ECO_RFID.INI 파일의 설정 값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가 피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권이나 배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⑶ 원고들이 ECO_RFID.INI 파일을 포함하여 피고 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배포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ECO_RFID.INI 파일뿐만 아니라 피고 프로그램의 다른 파일들도 포함하여 피고 프로그램 전체를 개별 공공도서관에 임의로 설치함으로써 무단으로 배포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증거(을5의 5, 10, 을8의 1, 2, 을15의 6, 8, 10, 을21의 1, 2, 을22)와 피고가 2010. 1. 무렵부터 피고 프로그램의 일부 파일을 패치를 통하여 삭제하기 시작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RFID 단말기를 도서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에 피고 프로그램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거나 배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개별 공공도서관에 KOLASⅢ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그 도서관 컴퓨터에 피고 프로그램 중 일부 파일을 함께 설치하였거나 그 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패치방식으로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통신암호 해독기를 설치한 것이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로써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RFID 단말기에는 피고 프로그램이 피고의 RFID 단말기가 연결되었을 경우에 구동되도록 '펌웨어 인증코드'가 수록되어 있는데, 원고들이 피고 프로그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을 원고 A의 RFID 단말기를 구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통신암호 해독기를 이용한 행위는 피고 프로그램의 물리적 복제를 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지닌 기술적 보호조치인 '펌웨어 인증코드'를 무력화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반론]

원고들은, 통신암호 해독기는 원고 A의 RFID 단말기와 KOLASⅢ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사이의 프로토콜을 연동시켜주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판단]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규정하였다. 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된 이후의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해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2조 28호 가목)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2조 28호 나목)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9호, 7조 등을 종합하면,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할 뿐(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참조),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1422 판결 참조). 이러한 저작권법의 개정 경위와 내용,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 2조 28호에 정해진 기술적 보호조치에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2조 28호 가목)와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2조 28호 나목)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구 저작권법의 적용당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는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펌웨어 인증코드는 피고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컴퓨터와 피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구동되는 RFID 단말기 사이의 통신을 위해 설정한 암호의 일종으로서 서로 다른 기기(디바이스)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기의 특유한 제어신호를 변경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을25, 29, 46에서 50,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프로그램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펌웨어 인증코드가 위와 같은 통신암호의 획득이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펌웨어 인증코드를 피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내지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기술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프로그램으로 원고 A의 RFID 단말기를 구동하기 위해 피고의 펌웨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인증코드를 이용하여 원고 A의 RFID 단말기의 통신암호를 피고 RFID 단말기의 통신암호로 변경하는 통신암호 해독기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피고의 펌웨어 인증코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펌웨어 인증코드를 통해 피고의 RFID 단말기 외에는 피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2조 28호 가목에 정해진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와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행위는 모두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나. 본소청구에 관하여(피고의 허위비방행위 등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이 피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2회에 걸쳐 허위로 고소하고, 원고 A과 거래하는 개별 공공도서관에 원고 A이 피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비방행위를 하고, 패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에 설치된 ECO_RFID.INI 파일을 비롯한 피고 프로그램을 삭제함으로써 원고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는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원고들에 대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여 저작권자로서 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 증거(갑1, 갑18의 1에서 10, 을15의 3, 10, 을19, 을28의 1, 2, 3, 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변호사를 통하여 2009. 12. 무렵 원고 A과 거래하는 개별 공공도서관에 원고 A이 피고가 저작권을 가진 피고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A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원고 A이 해당 도서관에 피고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하였는지 여부와 피고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실관계조회서를 발송하였다.

② 피고는 2011. 5. 23. 원고 A으로부터 RFID 단말기를 공급받아 운용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저작권이 피고에게 있는 피고 프로그램을 피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 프로그램의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③ 피고는 2010. 1. 무렵부터 패치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에 설치된 ECO_RFID.INI 파일을 삭제하였다.

④ 한편 피고는 KOLASⅢ 시스템이 아닌 ㈜D의 도서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에 피고의 RFID 단말기를 공급할 때에는 ㈜D에 그 시스템과의 연동비를 지급하였고, 법원도서관 등에 피고의 RFID 단말기를 공급할 때에도 ㈜링크소프트에 RFID 단말기와 그 도서(자료)관리시스템과의 연동비를 따로 지급하였다.

⑤ 원고 A 뿐만 아니라 E 등 다른 RFID 단말기 공급회사들은 RFID 단말기를 KOLASⅢ 시스템과 연동하여 구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별도의 구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 경쟁업자에 대하여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여 경쟁업자의 거래상대방 등의 제3자에 대하여 경고를 하거나 경쟁업자에 의한 침해의 취지를 알리는 행위는 그 후 법원의 판단으로 해당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효력이 없거나 경쟁업자의 행위가 해당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위비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이어서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해당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쟁업자에 대하여 그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가 경쟁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경쟁업자의 해당 행위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를 알리는 행위는 저작권에 기초한 권리를 진정으로 행사하는 일환으로서 경고행위 등을 행한 것이라면 해당 고지행위는 지적재산권의 행사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곧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이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또는 일반인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참조). 따라서 저작권자가 경쟁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전제로서 하는 경고행위도 그 자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가 경쟁업자의 영업상 신용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비추어 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을 알면서 또는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통상 필요한 사실 조사와 법률적 검토를 하면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굳이 경고한 경우에는 경쟁업자의 영업상 신용을 해하는 허위사실의 고지나 유포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고행위는 저작권자에 의한 저작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권리행사의 이름을 빌려 그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도 그 실질이 오히려 경쟁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을 훼손하고 해당 거래상대방과 거래나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고지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라면 일종의 부정경쟁행위로서 저작권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해당 고지행위가 진정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경쟁업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해당 거래상대방과 거래나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해당 고지문서 등의 형식과 문언내용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해당 고지에 이른 경위, 고지문서 등의 배포시기, 기간, 배포한 거래처의 수와 범위, 배포상대방의 업종, 사업내용, 사업규모, 경쟁업자와 관계 및 거래형태, 해당 거래상대방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원고 A과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인 개별 공공도서관에 원고 A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저작권법위반 사실을 알리는 내용과 피고 프로그램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개별 공동도서관의 컴퓨터에 설치된 피고 프로그램 중 일부 파일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피고 프로그램은 피고가 개발하여 공급하는 RFID 단말기를 구동하기 위하여 피고가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ECO_RFID.INI 파일의 리더기 타입에도 피고의 RFID 단말기 기종으로 설정되어 있어 외부에서 보더라도 피고의 RFID 단말기를 구동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기 전인 2009. 11. 23. 이미 피고의 저작물로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었다. KOLASⅢ 시스템에서 RFID 단말기를 구동하기 위해 반드시 피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실제 원고들도 원고 A의 RFID 단말기를 구동하기 위해 EZ-100RD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도서관의 사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KOLASⅢ 시스템의 프로그램과 일체화되지 않고 연동성이 떨어지는 불편을 호소하자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 프로그램의 RFID 장비구동용 설정파일 중 하나인 ECO_RFID.INI 파일을 도서관의 컴퓨터에 입력하고, 포트의 명칭과 리더기의 타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 프로그램을 원고 A의 RFID 리더기 구동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개발한 도서관리시스템인 KOLASⅢ 시스템 외에 다른 도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도서관에 피고의 RFID 단말기를 공급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과의 연동비를 별도로 지급해왔다. 더욱이 피고가 신청한 저작권침해정지가처분 사건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을 둘러싸고 다투어졌으나 원고 A의 저작권침해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피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피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곧바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기한 가처분과 관련한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패소 확정될 경우 부당한 가처분의 집행에 따른 손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피고의 형사고소나 저작권침해의 경고 등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손해의 발생이나 그 액수에 관하여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해당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균용

판사 박재우

판사 정윤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별지1

프로그램 목록

1. 프로그램

○ 등록번호 : F

○ 프로그램명칭 : ECO RFID SmartID (ER200, RFID_API)

○ 프로그램 종류 : 기타 사무관리 S/W

○ 창작연월일 : 2005. 3. 3.

○ 등록연월일 : 2009. 11. 23.

○ 저작자 : 주식회사 C

○ 저작권자 : 주식회사 C

2. 프로그램

○ 등록번호 : G

○ 프로그램명칭 : SmartID 부속모듈

○ 프로그램 종류 : 기타 시스템 소프트웨어

○ 창작연월일 : 2007. 1. 8.

○ 등록연월일 : 2010. 9. 10.

○ 저작자 : 주식회사 C

○ 저작권자 : 주식회사 C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별지2

사용내역서

순번	일시	장소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 내용
1	2009. 9. 28.	안양 어린이도서관	기존에 설치어 있던 이 사건 프로그램 중 ECO_RFID.INI 파일의 설정값을 변경하였다.
2	2009. 5. 25.	서울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상동
3	2010. 3. 18.	경상북도립 군위도서관	상동
4	2010. 7. 18.	경북도립 안동도서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프로그램에 ECO-RFID.INI 파일이 없어 위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자, 원격으로 또는 원고 직원이 소지하고 있던 ECO_RFID.INI 파일을 도서관 컴퓨터의 메모장에 입력해 넣음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하였다.
5	2010. 5. 6.	인천광역시 북구도서관	상동
6	2010. 6. 7.	창원시립 성주도서관	상동
7	2010. 6. 30.	울진남부도서관	상동
8	2010. 7. 22.	충북 중앙도서관	상동
9	2010. 8. 6.	의왕글로벌 도서관	상동
10	2010. 9. 2.	부산광역시립 시민도서관	상동
11	2010. 9. 14.	안양시립 비산도서관	상동
12	2010. 10. 8.	포항시립 동해석곡도서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프로그램에 ECO-RFID.INI 파일이 없어 위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자, 원격으로 ECO_RFID.INI 파일을 도서관 컴퓨터의 메모장에 입력해 넣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작동 되지 않아 원고 A의 EZ100RD 연결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별지3 **저작권 침해행위 발생 도서관 및 리더기 수량**

순번	일시	장소	납품된 원고 A RFID 단말기 수량
1	2009. 9. 28.	안양 어린이도서관	5
2	2009. 5. 25.	서울시교육청 동작도서관	6
3	2010. 3. 25.	울진 남부도서관	2
4	2010. 4. 6.	부산 해운대도서관	7
5	2010. 4. 8.	안성 시립도서관	4
6	2010. 4. 8.	시흥 중앙도서관	3
7	2010. 4. 28.	부안 교육문화회관	1
8	2010. 5. 17.	은평 어린이영어도서관	1
9	2010. 5. 31.	경남 양산 웅상도서관	8
10	2010. 6. 3.	시흥 군자도서관	2
11	2010. 6. 3.	전남 나주 공공도서관	2
12	2010. 6. 7.	고척도서관	4
13	2010. 6. 15.	대구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2
14	2010. 6. 21.	대구 파동 어린이도서관	2
15	2010. 6. 30.	대구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5
16	2010. 7. 7.	은평 어린이영어도서관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3-11-01

17	2010. 7. 27.	전남 나주 공공도서관	1
18	2010. 8. 10.	의왕 중앙도서관	9
19	2010. 11. 8.	경남 양산 시립도서관	3
20	2010. 11. 12.	경남 양산 시립도서관	1
21	2010. 11. 25.	전남 학생교육문화회관	1
22	2010. 11. 30.	경남 양산 시립도서관	2